

의료기관 세무 실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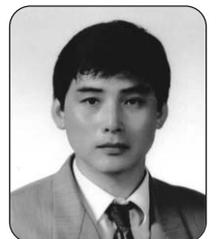


III.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개인병원은 물론이고, 비영리의료기관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거래에 관해 거래증빙, 지급규정, 내부품의서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손금이 당해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법에서는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1.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구분	대상	위반시 손금산입 여부	가산세
접대비	건당 5만원 초과거래	손금불산입	없음
접대비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매입시	건당 5만원 초과거래	손금인정	거래금액의 2%



글·유진호
신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공급하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가 아니다.
- 상품권매입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거래가 아니다.

2 정규지출증빙의 범위

세법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이다. 이때 각각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이외에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등도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종류

- 법인카드
- 법인개별카드 : 신용카드에 법인명의로와 당해 종업원 개인명의로가 함께 기재되고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의 카드
- 직불카드
- 백화점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사용자의 확인이 곤란한 선불카드나, 포인트카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다.

*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일반매입시에는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정규증빙으로 인정하지만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카드나 법인개별카드전표만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한다.

2) 위장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손금에는 산입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해야하고, 접대비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법인개별카드로 지출해야만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정규지출증빙서류의 보관

정규지출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각각 보관하지 않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전송받은 신용카드, 직불카드거래정보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도 정규지출증빙의 수취, 보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IV.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개인병원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범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에서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금융소득 및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의 합계액이며 기타수익 사업이란 의료업에서의 소득금액 및 기타 열거된 수입금의 합계액인데 당해년도에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과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설정한도
일반적 비영리의료기관	금융소득금액 × 100% + (수익사업소득금액 - 금융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 × 50%
사회복지법인 병원 학교법인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수익사업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포함) - 이월결손금 -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 × 5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때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란 결산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전액과 직접고유목적사업지출액 그리고 결산상 지정기부금 계상액의 합계액이다.

손금불산입 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는 경우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반영되어야 한다. 즉 장부상 계상되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무

1) 사용의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설정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한다. 5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줄어든 법인세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나 고정자산등의 취득에 직접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있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즉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내용에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학교법인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은 의료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의료법인병원의 경우는 목적사업자체가 의료업이고 이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의료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지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의료장비 등 특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사용한 것으로 보는 고정자산 취득

-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초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단층촬영기



-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발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가장 하고 의료발전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당해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여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 의료발전준비금이 환입됨으로써 결국 당해자산관련 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금을 인정받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5년 내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법인세 차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3/10000

V. 의료기관과 조세감면

공공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세법상 특혜를 주는 규정은 별로 없다. 현행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의 요건 하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료기관 역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조세특례제도는 준비금제도와 세액 공제감면제도가 있다.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많기 때문에 병원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200억 이하인 중소기업판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많다.

1.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

모든 의료기관은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범위액은 수입금액의 3%이며 설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사용기준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한다.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이 의료기기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금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매입시 취득원가에 포함된 현재 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 수입시 취득원가에 포함된 지급이자와 시가 초과 매입액은 투자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기관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관련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을 지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병원은 다음의 <방법 1>만 적용한다.

<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은 50%)를 공제하는 방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액 = (당해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 4년간 평균기술 및 인력개발비) × 40%(중소기업 50%)





<방법 2>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15%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의료기관이 에너지절약시설과 중수도시설, 절수시설등(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에 규정)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6.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기기, 조제기기, 치과 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7.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의료기관이 환경·안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시설은 오수처리시설등 환경보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VI. 의료기관의 지방세법

지방세란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수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내의 납세의무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지출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등 일반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특정 지출 용도를 지정한 목적세로 구분된다.

의료기관도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사업자와 다를바 없다. 지방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의료기관과 관련된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규정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비과세 혹은 면제

다음의 비영리의료기관이 의료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혹은 면제되고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
-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포함)
- 국립대학교병원
- 의료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 *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의료사업에 필수적인 토지이므로 직영하거나 임대를 불문하고 면제된다.
- * 영안실관련 지방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겠지만 직영하는 경우에는 의료사업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다.

2. 추징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의과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 **KHA**

